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9-47 관련
----------	-------------

발의년월일 : 2019. 6.

발 의 자 : 권영숙 외 1명

1. 수정이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지원계획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문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택을 구체적으로 나열 (안 제2조)

나. 지원계획 중 설치지원에 대한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다. 하반기 건축안전센터 신설·운영시 사업부서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서울

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총무과

장·건축과장”을 “총무과장·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건축과 담당

팀장”을 “담당팀장”으로 수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라.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

조항 신설 (안 제1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을”을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제2조제1호나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건축과장”을 “총무과장·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축과 담당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 주택의 소유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나목·다목 및 제2호 나목·다목 중에서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 ----- 3 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p>

나. (생 략)

2. (생 략)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 4. (생 략)

④ ~ ⑦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바. (현행 나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계획 수립) -----

-----.

1. ~ 4. (현행과 같음)

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총무과장·담당과장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담당팀장 -----.

④·⑤ (생략)

<신설>

제12조·제13조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소유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